

2020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보츠와나 

Botswana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2nd Revision)



개정 2판

#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20. 10.



## ■ 요약 문

- 해외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증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국방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8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UAE, 오만, 이라크)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을 신규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발간하였던 12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사우디, 이란, 케냐, 보츠와나, 멕시코, 알제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가이드북 또한 발간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으며 국가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2018년 11월 첫 출간 이후 2019년 1차 개정되었으며,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 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국가 개요나 방위산업 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보다는 해당국의 국방조달제도 및 관련 조직, 입찰 절차 및 전자입찰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였습니다.
- 보츠와나는 현재 방산 제조생산역량이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부재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비 구매도입에 보다 관심이 높아, 공동개발 및 합작에 의한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현지 방산 기업들이 제조 역량을 키우고 성장한 후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보츠와나 국방획득전략 기조는 [Chapter 1. 국방조달제도]에 신규 추가한 내용입니다.
- 보츠와나는 국방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입찰 프로세스의 초안 작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국방부(MDJS)에 있으나 실제 군용 물자 및 관련 물품의 조달을 위해 방위군(BDF)에 상당한 권한이 위임됩니다. 입찰공고는 PPADB의 입찰관리시스템(Integrated Procurement Management System, IPMS) 홈페이지(<https://ipms.ppadb.co.bw>)에서 확인 및 검색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Chapter 2. 국방조달체계] 및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에 수록하였습니다.
- 해외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외교부/KOTRA 국가별 개황, IHS Jane's, SIPRI, Forecast International, Global Data, 자체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제 목 차 례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	3
1-1. 조달정책 .....	3
1-2. 조달법규 .....	4
Chapter 2. 국방조달체계 .....	8
2-1. 조달 관련 조직 .....	8
2-2. 조달 의사 결정 절차 .....	9
Chapter 3. 입찰 과정 .....	13
3-1. 입찰 참여 절차 .....	13
3-2. 전자입찰시스템 .....	14
Chapter 4. FAQ .....	19
[부 록]	
1. 한국과 보츠와나 국방조달체계 비교 .....	25
2. 보츠와나 조달관련 서식 .....	26
3.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	27

## 표 차례

[표 1]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 Act) 세부사항 .....	4
[표 2]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규정(PPAD Regulation) 세부사항 .....	4
[표 3] 입찰소요기간 .....	16
[표 4] 한국과 보츠와나간의 국방조달 조직 및 운영 측면비교 .....	23
[표 5] 한국과 보츠와나간의 국방조달 조직 및 운영 측면비교 .....	24
[표 6]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26
[표 7]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	27

## 그림 차례

[그림 1]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22
[그림 2]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	23
[그림 3]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	24
[그림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25



Chapter 1

# 국방 조달 제도

1. 조달 정책
2. 조달 법규



##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 1. 조달 정책

- 보츠와나는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약 9,000명인 병력을 10,000명까지 증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중심의 불균형한 장비비율 해결에도 힘쓰고 있지만 기갑부대 확장만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계를 보임
- 보츠와나에서는 자체적인 방산 R&D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제조생산 기반이 미약하여 공동개발 및 합작 등을 통한 협력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츠와나는 현재 방산 제조생산역량이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부재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비 구매도입에 보다 관심이 높아, 공동개발 및 합작에 의한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현지 방산기업들이 제조 역량을 키우고 성장한 후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츠와나의 방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방식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군사 투자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실질 지출이 31% 감소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방·법무·안보부 예산이 크게 늘었고 2016년에는 6억44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자금조달은 고비를 넘김
- 투명성과 사업 환경이 양호하다는 보츠와나의 국제적 평판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문별 과제가 있음
  - 예를 들어 군사조달은 공공조달의 다른 분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치권에서 전직 군 원로급 인사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었음.
- 보츠와나의 조달 계획 및 조달 프로세스는 불투명하며, 최근 지상 방공 시스템, 장갑 차량 및 전투기를 획득하려는 조달 계획이 비교적 조용하게 발생
- 보츠와나는 대량의 중고 및 저비용 플랫폼과 시스템을 일부 새롭고 성능이 뛰어난 시스템과 함께 조달하는 경향이 있음

## 2. 조달 법규

### 가. 공공 및 조달 법령 및 운영체제

- 보츠와나의 공공 조달은 2001년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된 공공조달 및 자산 처분법(PPADAct)과 2006년 제정되어 2016년 개정된 동법 규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Regulation, PPADRegulation)에 의해 시행되며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군사 또는 국가 안보 조달 또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1]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Act) 세부사항

PART	상세내용
1	서두 (제1조-제2조)
2	개관 및 범위 (제3조-제9조)
3	이사회 설립 (제10조-제17조)
4	이사회의 및 회람 (제18조-제25조)
5	이사회 기능 및 권한 (제26조-제57조)
6	재정 및 행정규정 (제58조-제60조)
7	DPPAD(Devolution of 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운영 (제61조-제65조)
8	특별우대제도 (제66조-제76조)
9	감사 및 윤리 (제77조-제94조)
10	ICRC(Independent Complaints Review Committee) 설립 (제95조-109조)
11	자문위원회 (제110조-115조)
12	계약자등록 (제116조-127조)
13	일반조항 (제128조-132조)

자료 : 보츠와나 법령검색 포털 [www.elaw.gov.bw](http://www.elaw.gov.bw) (Latest version : 2006. 발효)

[표 2]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규정(PPADRegulation) 세부사항

PART	상세내용
1	서두 (제1조-제4조)
2	조달기관 (제5조-제19조)
3	공공조달 규정 및 과정 (제20조-제39조)
4	평가과정 (제40조-제53조)
5	조달방법선택 (제54조-제61조)
6	물품조달 (제62조-제68조)
7	건설조달 (제69조-제72조)
8	서비스조달 (제73조-제76조)
9	관리검토 (제77조-제79조)
10	일반조항 (제80조-제97조)
11	자산처분 (제98조-제122조)
12	공공자산저분방법 (제123조-제137조)

자료 : 보츠와나 법령검색 포털 [www.elaw.gov.bw](http://www.elaw.gov.bw) (Latest version : 2016.02. 발효)

## Chapter 2

# 국방 조달 체계

1. 관련 조직
2. 의사 결정 절차



## Chapter 2. 국방 조달 체계

### 1. 관련 조직

#### 가. 공공조달 주무기관 및 조직 체계

-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PPADB)는 법령 제42장 제8절(Act of Parliament Cap 42:08)에 해당되는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Act, PPAD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FED) 산하에 운영되는 공공조달 관리 기관임
- PPADB 하에 설립된 특별조달 및 자산처분위원회(Special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Committee, SPADC)는 엄격한 기밀 유지와 관련된 건설,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법(PPADAct) 제63조에 의해 설립됨
  - 위원회는 보츠와나 국방부, 정보보안 이사회, 부패 및 경제범죄 담당 부서, 형무소, 보츠와나 경찰청의 입찰을 심사
  - SPADC는 2명의 정회원, 1명의 비상근 위원, 공무원인 수석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사회 집행 위원장이 의장을 맡음

#### 나. 국방조달 조직 및 협의체

- 국방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입찰 프로세스의 초안 작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국방부(MDJS)에 있으나 실제 군용 물자 및 관련 물품의 조달을 위해 방위군(BDF)에 상당한 권한이 위임됨
- 보츠와나 방위산업 담당기관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Justice and Security, MDJS)이며 교도소(Botswana Prison Service), 법무청(Administration of Justice), 장군자문단(Attorney General's Chambers), 경찰청(Botswana Police Service), 방위군(Botswana Defence Force)로 이루어져 있음
  - 소형 무기의 수출입, 사용자등록, 딜러 및 중개 관리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각 인증기간은 한 번에 6개월임

## 2. 의사결정 절차

- 국방부 내 총사령관 산하 군수사령관의 획득국장이 방산물자 소요예산 검토 및 대상사업 검토 및 선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프로젝트 검토 및 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인사임
  - 이 같은 결정이 있는 후에는 대통령 최종결정, 국회 예산승인을 거쳐 공공조달 및 자산처분 이사회(Public Procurement and Asset Disposal Board, PPADB) 라고 하는 조달기관에 의뢰하여 비공개 형태의 입찰이 진행됨
  - 국방조달 결정 관련 인사의 서열 : 대통령 > 국방부(장관) > 총사령관 > 부사령관 > 지원사령관 > 군수사령관 > 획득국장(실무자)

## Chapter 3

# 입찰 프로세스

1. 입찰참여절차
2. 전자입찰시스템



##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 1. 입찰 참여 절차

#### 가. 공공조달 입찰 절차

- 보츠와나에서 국방분야 입찰은 비공개 입찰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제한입찰의 경우 먼저 관심품목을 정하고 해당 업체의 shortlist를 작성한 후 그 중 지정된 관심업체들에게 품목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됨
- 그 외 견적요청, 직접조달, EOI, 긴급조달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 국제공개입찰은 PPAD규정 제56조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 입찰자의 참여로 하여금 보츠와나 조달시장의 경쟁촉진, 가치창출, 조달요건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목표로 하고, 국내 입찰자 또한 국제공개입찰에 참가 가능
- 국제제한입찰은 PPAD규정 제57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서면 권한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공급자가 조달 가능할 경우, 비상사태로 공개입찰절차 진행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

#### 나. 국방조달 입찰 절차

- 입찰평가 후 1순위 입찰자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낙찰제안서는 입찰평가 위원회에 전달되고, 제안서가 승인되면 MTC 및 MATC에 의해 서명되어 조달 부서로 전달. 조달 기관은 기관장에 의해 서명된 낙찰 통지서를 준비하여 a) 평가점수, b) 책임, c) 규정, d) 계약수행능력, e) 계약수행자격 내용을 최종 낙찰자에게 통보
- PPAD 입찰매뉴얼 12.1에 따르면 공개국제입찰에서는 계약이 개시되기 전 완료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신용장을 사전에 개설하는 경우, 사전조치가 지연되면 계약시작 기간 또한 연기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면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는 계약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납품 일정, 빈도, 수량을 상세히 기술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PPAD법 제46절에 의해 계약종료 후 입찰부서는 이사회에게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업체의 a) 계약물품품질, b) 배송당시 계약물품의 실제성능, c) 계약완료 시기 및 완성도, d) 문의응답시간, e) 서면보고, f) 진행사항통보, h) 문제사항 정보제공, h) 문제해결속도, l) 작업시간의 정확성, j) 계약관리팀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평가한 계약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 전자 입찰 시스템

### 가. 공공조달 온라인 체계

- 보츠와나에서는 PPAD법과 PPAD규정이 모든 조달활동에 적용되며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방분야 또한 원칙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됨
- 입찰공고는 PPADB의 입찰관리시스템(Integrated Procurement Management System, IPMS) 홈페이지(<https://ipms.ppadb.co.bw>)에서 확인 및 검색 가능함

#### <참고> PPAD규정 제19조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조달절차

- (1)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기타 안보 기관 조달의 경우 공개입찰 및 제한입찰로 진행함
- (2) 조달기관이 제(1)항에서 언급된 제한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 (a)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b) 제한입찰을 통해 조달의 점진적 감소(progressive reduction in procurement)에 대해 동의하여야 함
  - (c) 제한입찰의 각 조달절차에 대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 함
- (3) PPAD법 또는 이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츠와나 방위군, 경찰청 등 기타 안보 기관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나. 국방조달 온라인 체계

- 입찰참여단계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PPADB의 입찰관리시스템(Integrated Procurement Management System, IPMS) 홈페이지(<https://ipms.ppadb.co.bw>)에서 확인 및 검색 가능함
- 국제공개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조달물품 규격 및 수량, 품질 등을 명확히 한 후 전문가 또는 지정된 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를 개발 및 확정된 뒤 입찰초청서(Invitation to Bid, ITT)를 발행하며, 날짜, 시간, 장소 및 형식을 지정하여 입찰시작
- 국제제한입찰에서 입찰제안서는 공개되지 않고 제한된 입찰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Short-listing 또는 EOI를 통해 진행됨
  - Short-listing을 통해 조달할 경우 모든 절차는 PPADB 혹은 위원회에 승인이 되어야 하며, 업체 정보는 PPADB 데이터베이스나 관련된 컨설턴트에게 수령 가능하고 업체는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연장 가능하며 허용되는 최소 기간은 PPAD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제공개입찰의 경우 최소 6주, 국내경쟁입찰의 경우 4주, 선정된 후보자를 기반으로 한 입찰의 경우 최소 2주임

- 입찰참여단계 - 입찰서류 제출
- PPAD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달부서는 입찰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각 입찰과 관련한 표준 입찰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
  - a) 필수항목, b) 기술 및 품질특성(규격서), c) 사용된 입찰절차에 따른 입찰평가 기준, e) 각 기준 별 할당 점수, f) 각 기준 별 평가측정기준
- 기술 및 가격제안서는 별도의 봉인된 봉투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자의 입찰 세부사항, 이름 및 주소를 표기
  
- 입찰참여단계 - 제안서 평가 및 낙찰
- PPAD규정 제6.13절에 따라 평가 방식은 ITT에서 계약목적, 배경 및 특성, 제출방식 등과 함께 기술되며 입찰서류는 해당부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개별 보고서를 통해 각 기준 별 평가점수, 입찰자 순위, 각 입찰자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채택함
-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어 제안서는 반환됨. 기술요건 충족 시 가격제안은 이사회 승인 후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기술 및 가격점수 및 가중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Shortlist를 통해 참가한 국제입찰자는 가격제안서 공개 전 최소 2주 (현지 입찰자의 경우 최소 1주) 내에 현지초청

[표 3] 입찰소요기간

입찰절차유형		소요기간
1	Open domestic(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publication period	Minimum 4 weeks
2	Open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publication period	Minimum 6 weeks
3	Selective Tendering-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4	Quotation proposal procurement (RFQ) -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Direct procurement method- floating period	Minimum 2 weeks
5	Adjudication and award	Maximum 14 calendar days for normal tenders
		Maximum 30 calendar days for large & complex tenders (supplies & works)
6	Notification of adjudication decisions of the Board to Procuring Entities	Within 2 days of approval by the Board.
7	Publishing of adjudication decisions of the Board	2 working days following approval by the Board
8	Placement of Contract (including contract negotiations)	Maximum 8 weeks
9	ITT vetting	10 working days
10	Publication of vetted Tender notice	5 working days
11	Vetting of procurement procedures for Parastatals	60 calendar days
12	Evaluation of tenders	30 calendar days after collection/opening of bid Forty five (45) calendar days after collection/opening of bid for large complex tenders

자료 : PPADB, Customer Service Standards for PPADB

Chapter 4

F A Q



## Chapter 4. FAQ

### Q1.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 시 장애요인 및 시행착오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 무기체계의 경우 현지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는 등의 현지운용여건 확인이 힘들고 특히 보츠와나 대통령, 국회, 국방부, PPADB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이해관계를 전제하여야 조달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등 사전적 협력이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 전력지원체계 진출의 장애요인 및 시행착오 주요 요소로는 유럽규격의 요구 및 한국 시험인증에 대한 불인정 등이 존재합니다.
- 그 외, 보츠와나 입찰 시 자국민 우대정책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2.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가능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요?

- 보츠와나는 제조·생산활동이 불가하고 유지·보수 및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방위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어 중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세워 방산물자를 해외로부터 조달함으로써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산 장비조달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산 전차나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조달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주로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등 중심으로 수입되어 왔으며 최근 제11차 국가개발 계획에서는 전투기, 군용차량, 대공시스템 등에 대한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보츠와나 방산품목의 각 품목별 수명연한을 비교분석하여 도태시기에 가까워진 방산 품목을 획득소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과 우리나라의 對보츠와나 수출 품목 및 수출가능 후보 품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로 보츠와나 조달계획 품목을 고려하여 도출된 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무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득소요 예측) 전차, 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대공감시레이더, 경비용 보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품목) 전차, 전투기</li> </ul>
전략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츠와나 조달계획 품목) 군용 피복(유니폼), 보호복 및 장비, 유니폼, 보안 장비(CCTV, 접근통제시스템 등 포함), 전자제품, 기계 및 기계 부품, 발전기 및 발전기 부품, 차량 및 차량 부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소방장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품목) 군복, 군용품, 기계류, 차량류</li> </ul>

### Q3.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하나요?

-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입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보츠와나는 직접 관리하는 무관 및 관련기관이 없어 주변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대사관의 무관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현지 에이전트의 정보 수집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Q4.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보츠와나 국방부에 입찰참여를 할 경우**, 아래 진출 준비사항 Check-li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사항
입찰정보수집	현지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가?
	진출국의 조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해당 전략을 세웠는가?
전략물품선정	보츠와나 연간조달계획에 해당 품목이 존재하는가?
	보츠와나 방위군 중 해당 제품에 대한 명확한 사용의사를 확인하였는가?
국제적 품질인증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품질인증을 획득했는가?
	완제품 판매 시, 시험평가팀의 현지 방문 완제품 시험검사를 대비한 준비를 하였는가?
계약이행자 관리	계약이행자인 직원들의 채용 및 업무범위를 기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기타 고려사항	보츠와나 수출을 위한 허가 등록을 받았는가?
	개발예산에 반영되기 위해 국방부 획득국장 접촉을 통한 제품홍보를 진행하였는가?
	군수공장 수립 등 합작형태로 진출을 고려할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투자정보를 확보하였는가?
	조달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신뢰성 있는 현지 기업과 교섭하여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체결 시, 이익분배 및 로열티,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철저한 준비를 하였는가?

Q5.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있나요?

◎ 보츠와나 진출 시도 및 성공사례와 그에 대한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출 기업	진출형태	조달품목	성공요인	장애요인/시행착오
○○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시도	침낭, 군화, 배낭, 벨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입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가 자체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를 매우 낮추어야 함</li> <li>■ 영어/프랑스어로 된 제품규격 설명서 요구</li> <li>■ 유럽규격 등을 요구</li> <li>■ 한국에서 시험검사를 했음에도 현지에서 재시험 검사요구</li> </ul>
○○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용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대응 (현지운용여건 확인 등)</li> <li>■ 소요발생시 적절한 사절단 방문 보츠와나 국방부와 한국정부가 협력체계 구축 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운용여건과 환경에 맞는 현지화가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li> </ul>
○○ ○	현지 에이전트 통한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발생시 적절한 사절단 방문</li> <li>■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정보입수</li> <li>■ 보츠와나 공군에 직접 접촉하여 대응하여 적극적 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변수 존재</li> <li>■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 PPADB 등 조달과정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의 수금 필요</li> </ul>





## 부록

1. 한국과 보츠와나의 국방조달체계 비교
2.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 부 록

### 1. 한국과 보츠와나의 국방조달체계 비교

#### 가. 법규 및 제도적 측면

- 보츠와나는 한국과 상이하게 계약을 위한 입찰 기준, 낙찰 기준 등의 공개가 제한적임

[표 4] 한국과 보츠와나간의 국방조달 제도 및 법률적 측면 비교

구 분	보츠와나	한 국	비교 결과
조달 법규	정부 계약법령(임차 및 서비스, 건설 구분) 있음 국방부/해군부 내부 국방조달절차 있음	정부 계약법령 있음 방위사업청 내부 조달절차 있음	유사
입찰 절차	입찰자가 입찰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입찰자가 입찰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	유사
입찰 기간	최소 2주 ~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소요기간은 일반장비 및 물자의 경우 입찰공고 후 2~3개월 이내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li> <li>• 무기체계는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까지 약 1년 소요</li> </ul>	품목에 따라 상이함
절충교역	절충교역을 통해 신기술 개발 등 고도성장	절충교역 시행 성숙	멕시코는 절충교역 시행 초기단계
방산 역량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상, 해상, 항공산업 생산능력 구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구비	유사

나. 조직 및 운영 측면

- 보츠와나 국방부가 조달 소요 검토 및 조달계획 수립을 담당. 실질적 조달집행은 조달기관인 PPADB를 통해 진행
- 정부의 전자조달체계인 ‘IPMS’을 운영하고 있음

[표 5] 한국과 보츠와나간의 국방조달 조직 및 운영 측면비교

구 분	보츠와나	한 국	비교 결과
국방통합 조달	국방부가 조달 소요 검토 및 조달계획 수립을 담당. 실질적 조달집행은 조달기관인 PPADB를 통해 진행	국방조달을 위해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중앙조달물자)과 국군재정단(전투지원체계, 일반장비 및 물자)이 있음	PPADB를 통해 진행됨
정보공개	비공개 입찰로 진행	방위사업청은 조직도 및 업무별 연락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군재정단 조직도는 확인 가능하나 업무별 연락처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	비공개
전자조달 체계	IPMS 홈페이지 운영	국방전자조달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체계(d2b)’ 운영	일반물자와 통합관리
입찰정보 확인	국방분야는 제한적임	무기체계 입찰공고는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 가능 일반장비 및 물자류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체계(d2b)’에서 확인 가능	국방분야 정보 검색 제한

## 2. 조달관련 문서 및 서식

[그림 5] PPADB 벤더 등록 서식



REPUBLIC OF BOTSWANA  
COMPANIES ACT  
CHAPTER 42:31

FORM 21 B  
DOCUMENT  
NUMBER

---

FORM 21 B  
LIC ONLY

FORM OF ANNUAL RETURN FOR A  
COMPANY LIMITED BY SHARES  
(Section 217)  
TO BE COMPLETED LEGIBLY IN BLACK INK

**1. Form of Annual Return of a Company Limited by Shares**

Annual Return of Company number ..... Company name  
..... Company Limited by shares  
made up to the date of the Annual Meeting.

Date of meeting ..... or Resolution in lieu of meeting  
under section 107 (2) of the Act, being for the year .....

1. Physical and Postal Address of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company  
.....

2. Physical and Postal Address of the company  
.....

3. Address at which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r members is kept (if not kept at registered office)  
.....

4. Address at which financial records are kept (if not kept at the registered office)  
.....

The company is-[tick/cross the correct box]

(i) A public company

(ii) A non-exempt company

(iii) An exempt company

**2. Summary of Share Capital and Debentures**

**Share Capital**

1)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

2) Total amount paid up on shares P .....

Total amount called but unpaid P .....

Amount received on any shares forfeited P .....

**Stated Capital** P .....

3) Classes of Shares

Number	Class
.....	Ordinary
.....	Preference

### 3. 방산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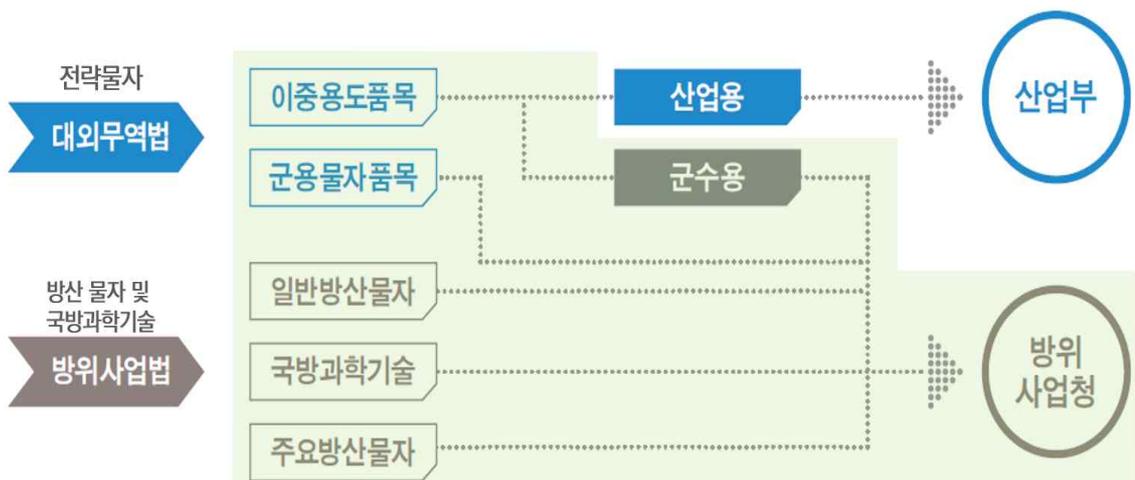
#### 가. 방산수출 통제/허가 개념 및 관련 법규

- [수출통제/허가의 개념] 국제평화, 국가안보, 기술보호 등을 위해 방산물자 및 전략 물자와 관련한 기술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등의 행위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수출통제/허가 대상품목]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한 방산물자, 전략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

[표 6]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 고시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관리규정 1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방산수출 통제/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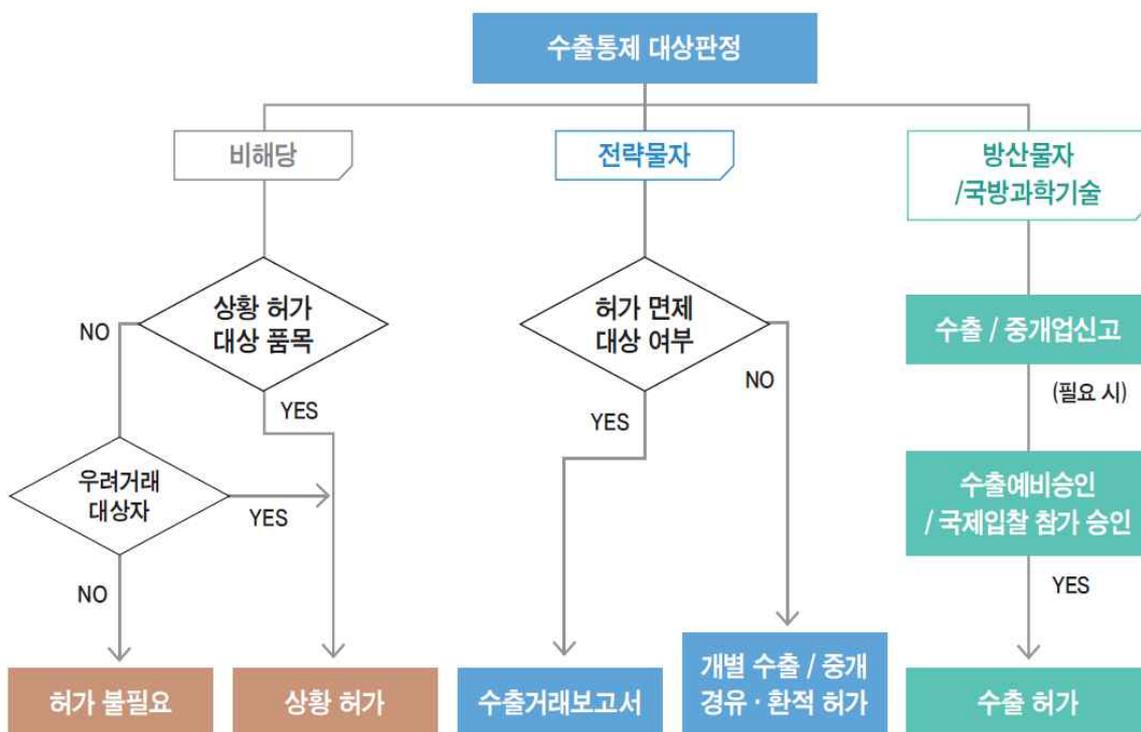


[그림 1]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1) 방위사업청,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2)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나. 방산수출 통제/허가 절차

- 방산수출 허가 절차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로 구분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 수출 통제/허가 심사 기준은 수출 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여부,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가능성, 수입자/최종사용자/사용목적의 신뢰성, UN등 국제체제 제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그림 2]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 [수출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표 7]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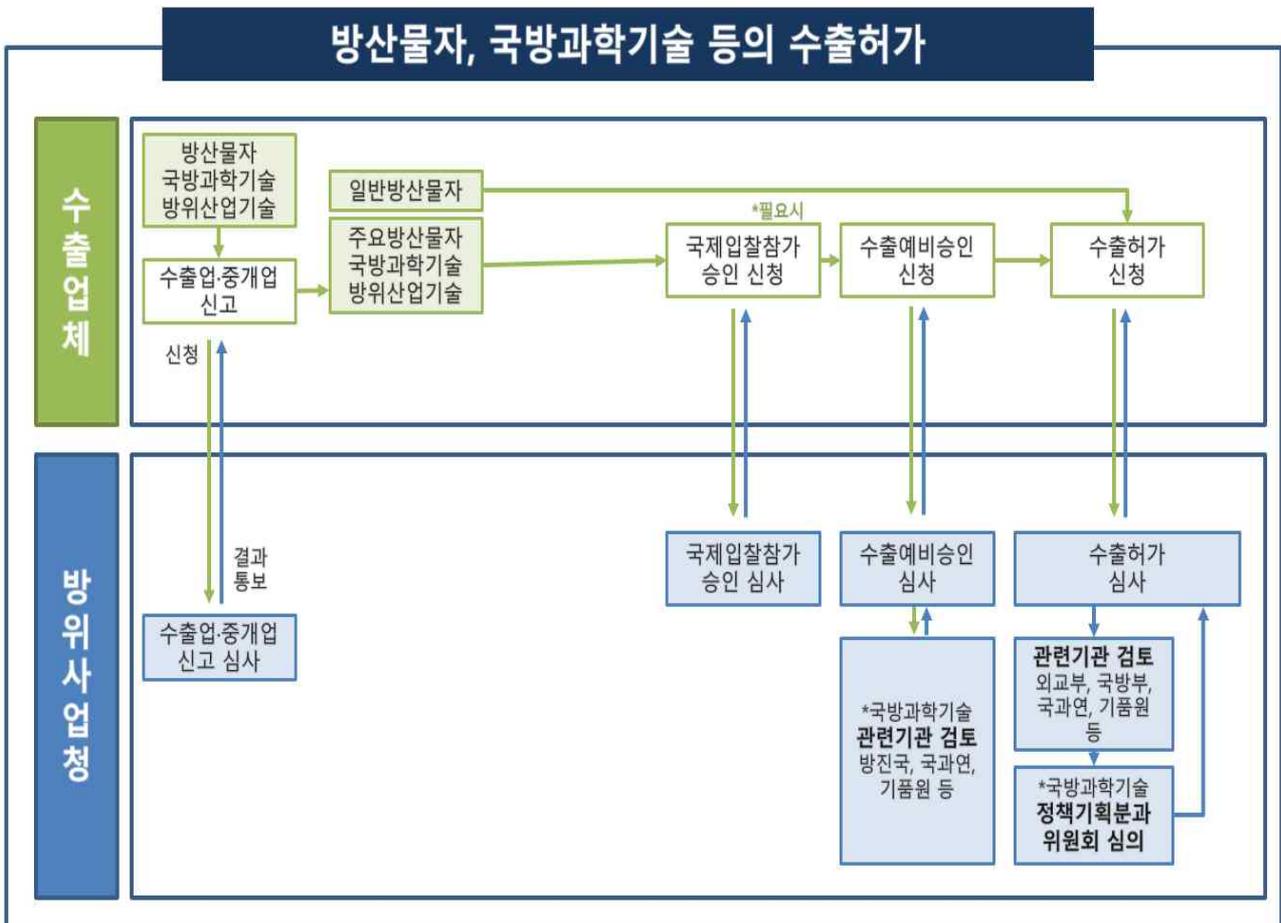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li> <li>최종사용자 증명서</li> <li>수출 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li> <li>최종 수하인 진술서</li> <li>최종 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보유 기관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li> <li>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li> <li>수출 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li> </ul>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 수출업·중개업 신고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 중개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입찰참가 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예비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수출허가 신청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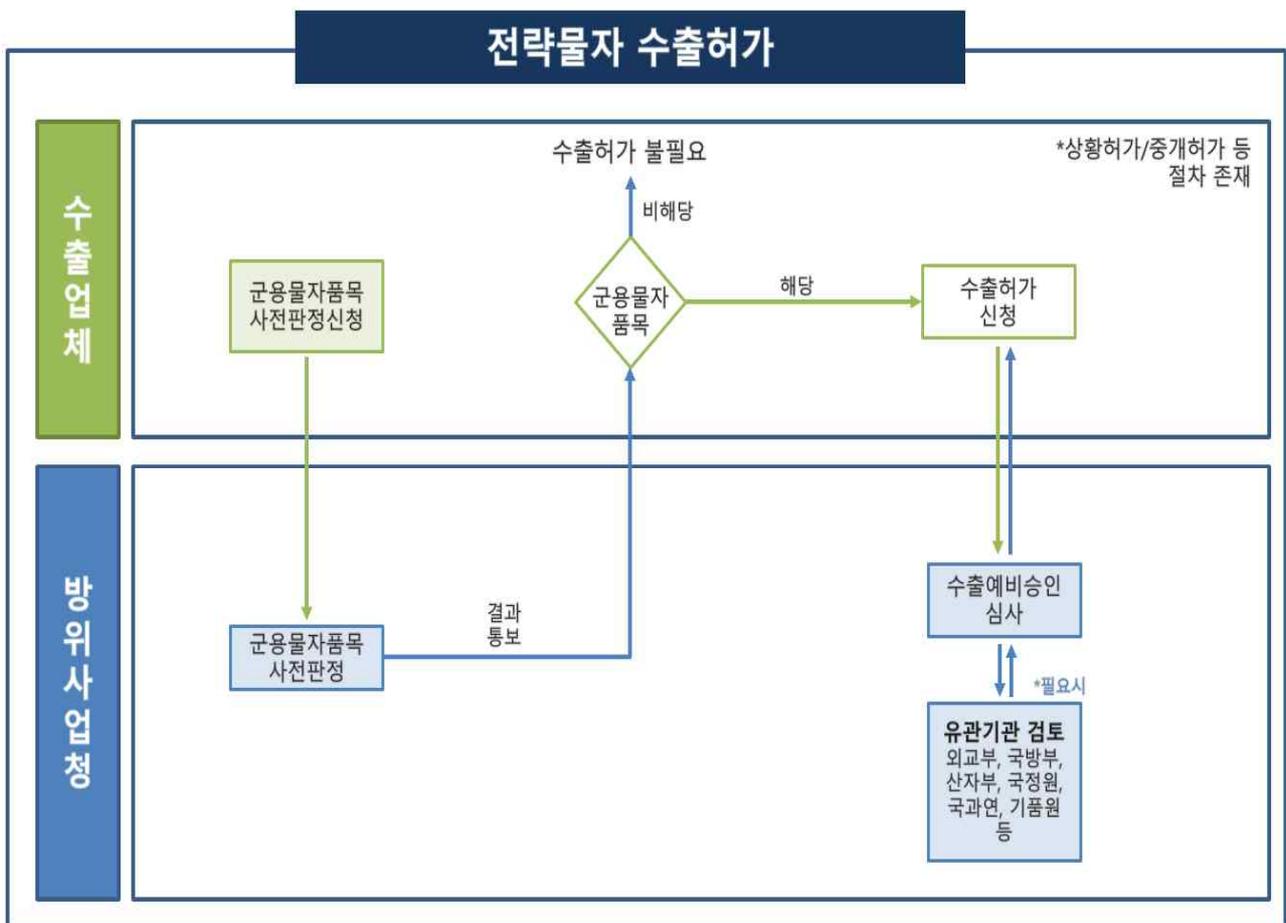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수기 접수 등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에서 신청 가능)



[그림 3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여부 및 전략물자 대상 품목 확인을 선행해야 함
-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 또는 군용물자 대상품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 가능
  - 자가판정은 2020.6.19.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정을 할 수 있음
  - 전략물자 대상여부 자가판정은 품목에 따라 신청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짐
    - 군용물자품목(ML1~ML21) 자가판정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에서 신청
    -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을 이용



[그림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보츠와나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Botswanan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최초 발행 : 2016. 12.  
 개정 1판 발행 : 2020. 1.  
 개정 2판 발행 : 2020. 10.

작성			
성명	분야	전화번호	E-mail
윤범식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93	coldcoin@dtaq.re.kr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수출지원1팀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선임연구원 원준호	

